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인정 철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11.

대 구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 (생년월일)	주 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
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정O빈 (03.07.28.)	경북 경산시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	2026.7.14. 이후 연락두절되어 출석통지서 2회 발송에도 미출석 등	-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-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폐 문 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 9. 11. ~ 2026. 9. 25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이정운(Tel. 053-667-6116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